

【여주대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4. 4.

여 주 시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3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개요	3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6. 용역감독 등	6
7. 수급인의 책임	7
8. 보안 및 비밀유지	7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7
10. 설계변경	8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8
12. 용어의 해석	8
13. 발주처 제공자료	8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9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0
제 2 장 과업의세부내용	12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12
2. 구조물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12
3. 비파괴 시험	12
4.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12
5.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13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3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4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여주대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이라 칭하며 경기도 여주시를 발주처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점검용역으로 교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결함의 발견 및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연번	교량명	노 선 명	위 치	구 조 형 식		제 원		설계하중	준공년도
				상 부	하 부	연 장	폭		
1	여주대교	지방도 345호선	상동 - 천송동	RCS+STB	T형	502.6m	17.5m	DB-24	1997

2) 과업규모 :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1식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내용

-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 (4) 시설물의 내구성 조사 및 평가(비파괴시험 등)
- (5)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7)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 (8)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 입력
-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발주처 및 연락처

- (1) 발주처 : 경기도 여주시청[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홍문동)]
- (2) 연락처 : TEL.(031)887-2435, FAX.(031)887-2469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 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점검용역 수행자 책임의식 고취 등 점검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정밀점검용역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3) 성과품 작성시
- (4) 준공시

5) 최종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종합보고서(정밀점검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내용을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처가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 고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처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처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1) 결과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오류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문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처가 변경된 때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발주처 제공자료

- 1) 발주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수급인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 안전점검 성과품 일체

- 안전점검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별책부록)
- 과거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이력

2)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 적용기준

- (1)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 (행정안전부)
-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해양부)
-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관련법령 및 규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 (4) 도로법
- (5) 건설기술관리법
-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7) 기타 관련법규

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5.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일반적 사항)

-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 '99.9.9) 제36조2항에 따르며, 손해배상 사유 발생 및 「손해배상 분쟁조정」 등은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용역계약과- 4577, 2009. 4 . 30.) 제16조 및 제16조의1~6 규정을 준용한다.
- (5) 발주처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점검용역 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기점검을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부실수행 하였을 때
 -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점검용역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⑤ 참여건설기술자가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 (1)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수공사(별도발주)후 이상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교량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분석
- 2)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분석·평가
-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장조사를 시행
- 4) 기타 정밀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분석
-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구조물의 제원 및 외관상태조사

- 1) 종·횡단면도 및 제원 조사
- 2) 육안조사를 통한 성능저하 현상 파악
- 3) 손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시공당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시험

-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변형, 열화상태 및 물성(강도, 중성화)현황을 기존 점검 및 진단보고서와 비교하여 변화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 1)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로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 2)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 비파괴 시험은 정밀점검 외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시험위치를 정한다.
- 4)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여야 하며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규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C, D, E등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재별, 경간별 총괄표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정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의 구조형식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CHECK LIST)작성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 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구조 부위별 붕괴유발부재나 부위를 명시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CD-ROM	
종합보고서 (정밀점검 보고서)	각 3부	3 SET	
와관조사망도	각 3부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 요약철 및 현황 도면 등